##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92

발의연월일: 2020. 8. 20.

발 의 자:임오경·서삼석·장철민

김영주 · 전용기 · 김경만

박성준 • 윤후덕 • 김민철

이수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(이하 기본계획)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도모하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"코로나19")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전통무예공연이 위축되고 있음. 코로나19의 대 유행이 계속되면서 전통무예진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, 감염 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전통무예 종합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전통무예 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전통무예의 대중화와 진흥을 장려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항제7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전통무예 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	제3조(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
수립 등) ① (생 략)	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,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7. 전통무예 시설 및 단체의 감
	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
	리에 관한 사항
<u>7.</u> (생 략)	<u>8.</u> (현행 제7호와 같음)